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등						예산 (백만원)	110,318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내용	○ (축산악취개선) 퇴액비화시설,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등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에너지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 등 ○ (퇴비·액비살포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등							
사업 신청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지원대상 선정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2,618	83,345	100,572	110,318			
	국 고	36,908	35,050	45,049	49,401			
	융 자	55,710	48,295	55,523	60,9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김선이		044-201-2357 044-201-2363	
지자체	축산담당과				-		-	

1. 사업대상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 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시설, 축산악취 취약지역내 축산농가·시설 등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대상자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제2조,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 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젓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 액비저장조

- ①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②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③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튼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 ①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확보
 - * 다만, 퇴비살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살포지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
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
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①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 연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매년초)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
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①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②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③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④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약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⑤ 약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⑥ 약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약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⑦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①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②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③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 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

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④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 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액비성분분석기 : 퇴·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퇴·액비부속도판정기 : 퇴·액비부속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 포함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하며, 지자체는 퇴액비살포비 지원시 해당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축산악취개선	20	20	50	1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50	5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① 지역(시·군·구) 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 산출
 -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 2년 이상 계획사업인 경우, 이전년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2,000천톤이내 지원)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 ⑤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살포 실적 등을 점검하여 우수한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 시설	개별 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200				
· 퇴비·액비살포비	200천 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퇴·액비성분분석기	37				
· 퇴·액비부속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m²)

축 종	대 지	한·육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약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

○ 공동자원화사업비 지원 한도액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 조직 신규 지원 제외)
 -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70	100	150	200	250	300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개보수(증축 포함)	개보수 : 1,500/개소 * 증축이 포함될 경우 3,000/개소					
마을형퇴비자원화	200/개소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 당해 시설용량, x ¹ : 작은 시설용량, x ²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 ¹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 ² : 큰 시설용량 단가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 ①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②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③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④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직전년도 2월)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2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사업신청자

- 시·군·구는 신청 서식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신청(2월말)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공모사업은 「기본규정」 제4조 및 제40조, 제42조 규정을 확인 후 선정위원회 개최
- * 선정위원회 위원수(5~15명 이내), 외부위원 구성비율(2/3 이상), 선정결과 공개 등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순위 및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직전년도말까지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축산악취개선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지역내 축산악취 개선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⑤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시설

3. 사업계획서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및 보완사항 등 검토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를 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 시행계획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 시·도에서는 제출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시·군·구의 보완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사업비 확정 요청)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실시
 - 관련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자체 및 농식품부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통보 받은 후 60일 이내 보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를 통해 시·도에 제출

4. 사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및 예산 집행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용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5.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농식품부 고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 · 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6.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 (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 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용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7.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를 시·도(시·군)에 작성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시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개선필요시 해당 시·도(시·군)에 안내 및 현장지도 등 실시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여부(시설설치, 예산집행 등)를 점검(해당 시·도 합동)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한 컨설팅 실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 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속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속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속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 참여 제한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21.3.31 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2.1.05 한 2022.3.05 한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1.3.15 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21.12.31 한		

2. 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속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참고>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2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1.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1.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1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축산악취개선사업)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2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0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는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울타리)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소독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것
- 자원화조직체 점검 후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은 '21년까지 지원하고 '22년부터는 개보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